

## 가구생계비로서의 최저임금

2015.06.22 | 이정아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 tempjunga@gmail.com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를 ‘가구생계비’와 관련하여 개최한 토론회. 이정아 고려대 경제학 박사가 발제자로,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2일(월) / 국회 의원회관 2간담회실

주최 기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소비 자원으로서는 임금

#### ○ 저임금이라는 용어의 범주오류

-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해소하겠다는 저임금의 개념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임금에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저임금이 해소되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
- 그러나 최저임금제의 효과적 운영을 반대하는 논거로 종종 제시되는 최저임금제에 의한 ‘저임금’ 일자리의 감소 주장에서 저임금은 정확히 위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의미함.
- 이는 일종의 범주오류로,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구상하고 도입하게 한 역사적 현실로서 ‘저임금’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사회적 재생산을 위협할 정도로 낮은 수준임.
- 굳이 구분하자면 전자를 **상대적 저임금**, 후자를 **절대적 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음. 생계와 건강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상대적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사회와, 다수가 공평하게 절대적 저임금 상태인 사회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 물론 상대적 저임금의 해소도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지만, 절대적 저임금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환경인 사회/공동체의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됨.
-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절대적 저임금 해소에 최소한의 목적을 둔 공동의 노력이자 제재임.

## ○ 절대적 저임금의 평가기준

- 절대적 저임금의 평가기준이 곧 최저임금제 운영을 위한 핵심 지표.
- 빈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질 자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정의되는데, 빈곤 또한 단순히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음. 생활비에 비해 소득이 부족할 때 발생함.
-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길러내는 데 쓰이는 생활비, 생계비를 위한 **소비** 수준보다 낮은 소득을 주는 임금은 절대적 저임금임.
- 이때 소비의 단위가 개인이 아닌 가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 사회의 존립과 재생산을 이어갈 ‘후속 세대’는 가구 (또는 그 이상의) 단위의 자원 공유 없이 갑자기 출현하지 않음.
- 사회/공동체의 공동의 구성원인 기업이 사회/공동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불했던 산업주의 시대의 경험은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탄생시켰음.
- 따라서 소비의 기본 단위인 ‘가구’ 소비를 위한 자원인 임금은, 최소한 바로 그 가구의 생계수준이 되어야 함. 가구의 생계수준이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고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

## 최저임금위원회의 단신근로자 생계비 자료

## ○ 최저임금 결정 지표

-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 지표는 크게 네 가지라고 함.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구체적으로는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
- 표 1은 최저임금위원회와 양대노총 등이 제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언뜻 보면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었는지 알기 어려움.
- 그러나 그림 1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음. 최저임금 인상률과 단신근로자 생계비 인상률은 매우 유사하게 보임.
- 결과적으로 단신근로자 생계비 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계속 비슷하게 유지되었으므로, 단신근로자 생계의 충족 관점에서 대체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

표1.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원)

적용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최임위사무국.통계청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계
		3월	10월			
'15	7.1	1,506,179		2,058,464	미제출	960,354
'14	7.2	1,512,717		1,939,878		932,716
'13	6.1	1,410,748		미제출		미제출
'12	6	1,312,755		1,776,820		801,942
'11	5.1	1,233,419		1,574,000		785,991
'10	2.75	1,193,597		1,474,170		-
'09	6.1	1,158,254		1,485,320		-
'08	8.3	-	1,224,310	1,310,010		826,296
'07	12.3	-	1,176,695	1,270,830		-
'05.9~'06.12	9.2	-	1,135,234	1,214,700		-
'04.9~'05.8	13.1	-	1,088,496	1,179,491		-
'03.9~'04.8	10.3	-	624,819	1,321,863	1,264,731	-
'02.9~'03.8	8.3	-	561,661	1,271,703	1,185,362	-
'01.9~'02.8	12.6	-	519,306	1,004,543	1,147,596	-
'00.9~'01.8	16.6	-	449,699	951,931	1,073,436	-
'99.9~'00.8	4.9	-	391,925	915,794	996,359	-
'98.9~'99.8	2.7	-	358,907	856,998	1,007,918	-
'97.9~'98.8	6.1	-	329,919	630,286	954,244	-
'96.9~'97.8	9.8	-	305,764	577,335	886,211	-
'95.9~'96.8	8.97	-	281,228	523,048	-	-
'94.9~'95.8	7.8	-	257,804	447,082	-	-
'94.1~'94.8	7.96	240,644	-	394,970	-	-
'93	8.6	217,867	230,385	337,385	-	-
'92	12.8	197,692	207,095	304,893	-	-
'91	18.8	167,296	190,239	-	-	-
'90	15	142,887	153,741	185,383	-	-
'89	1그룹(29.7)	128,093	133,240	150,094	-	-
	2그룹(23.1)					
'88		115,426	-	159,33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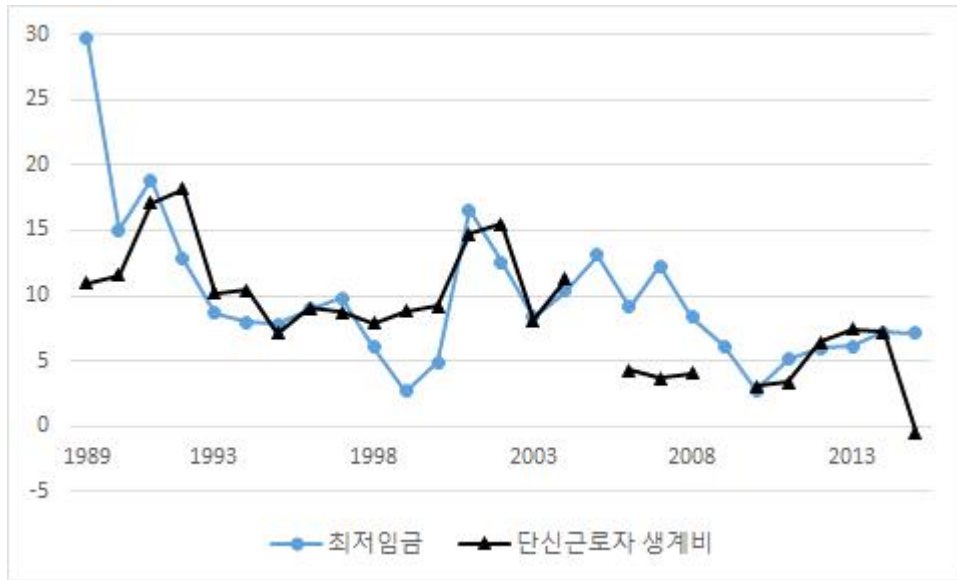
출처: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LivingAnaly\\_3.jsp](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LivingAnaly_3.jsp))

주1: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자료는 산출시점 기준 '88~'02년까지는 18세 연령, '03~'06년까지는 15~29세 연령의 실태생계비이며, 통계청 자료는 전 연령(15세~)의 실태생계비임. 산출시점은 적용년도 기준시 2년 전 ('94년까지는 1년전)의 10월 한달의 기간임

주2: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04년 심의부터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서 산출한 실태생계비에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를 더하여 최저임금 적용년도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안)를 산출. 양노총 자체에서 조사하여 이론생계비 산출. '08년까지는 29세이하, '09년 33세이하, '10년 이후 34세이하 생계비 활용·가공.

주3: 한국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서 산출한 실태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를 더하여 최저임금 적용년도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안)를 산출. '08년에는 하위 1분위, '11년 이후 하위 25% 생계비 활용.

그림3. 최저임금과 단신근로자 생계비 인상률(%)



주: 자료 연결성 문제가 있는 2005년과 이상치로 보이는 2009년의 생계비 인상률은 제외.

## ○ 단신근로자 생계비의 기저

- 최저임금으로 단신근로자 생계비 수준은 충족이 될까?
- 표 2에서는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환산하여 최임위와 양대노총에서 조사한 단신근로자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나타냄.
- 생계비 자료의 조사 시점이 결정된 최저임금의 적용 시점에 비해 2년 지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최저임금은 단신근로자 생계비의 90%에 다다른 적도 없음.
- 2013년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신근로자 생계비의 단 70%도 벌 수 없으며, 양대노총의 조사 결과에 비하면 60%도 되지 않음.
-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시기보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볼 때 더 나빠졌음.

표2. 단신근로자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

적용 년도	최저임금		단신근로자 생계비							
	시급	월급환산	최임위					양대노총		
			월생계비	시급 환산	최임 비율	시급 환산*	최임 비율 *	양대노총	시급 환산	최임 비율
1988	462.5	112,542	115,426	474	0.98	587	0.79	159,332	655	0.71
1989	600	140,786	128,093	546	1.10	713	0.84	150,094	640	0.94
1990	690	161,904	142,887	609	1.13	843	0.82	185,383	790	0.87
1991	820	185,281	167,296	740	1.11	964	0.85			
1992	925	209,006	197,692	875	1.06	1,065	0.87	304,893	1,349	0.69
1993	1,005	227,082	217,867	964	1.04	1,141	0.88	337,385	1,493	0.67
1994	1,085	245,158	240,644	1,065	1.02	1,245	0.87	394,970	1,748	0.62
1995	1,170	264,364	257,804	1,141	1.03	1,353	0.86	447,082	1,979	0.59
1996	1,275	288,089	281,228	1,245	1.02	1,460	0.87	523,048	2,315	0.55
1997	1,400	316,333	305,764	1,353	1.03	1,588	0.88	577,335	2,555	0.55
1998	1,485	335,539	329,919	1,460	1.02	1,735	0.86	630,286	2,789	0.53
<b>1999</b>	<b>1,525</b>	<b>344,577</b>	<b>358,907</b>	<b>1,588</b>	<b>0.96</b>	<b>1,990</b>	<b>0.77</b>	<b>856,998</b>	<b>3,793</b>	<b>0.40</b>
2000	1,600	361,524	391,925	1,735	0.92	2,298	0.70	915,794	4,053	0.39
2001	1,865	421,401	449,699	1,990	0.94	2,486	0.75	951,931	4,213	0.44
2002	2,100	474,500	519,306	2,298	0.91	2,765	0.76	1,004,543	4,446	0.47
2003	2,275	514,042	561,661	2,486	0.92	4,817	0.47	1,185,362	5,246	0.43
2004	2,510	523,514	624,819	2,996	0.84	5,443	0.46	1,264,731	6,064	0.41
2005	2,840	592,343	1,088,496	5,219	0.54	5,642	0.50	1,179,491	5,655	0.50
2006	3,100	646,571	1,135,234	5,443	0.57	5,870	0.53	1,214,700	5,824	0.53
2007	3,480	725,829	1,176,695	5,642	0.62	5,553	0.63	1,270,830	6,093	0.57
2008	3,770	786,314	1,224,310	5,870	0.64	5,723	0.66	1,310,010	6,281	0.60
2009	4,000	834,286	1,158,254	5,553	0.72	5,914	0.68	1,485,320	7,121	0.56
2010	4,110	857,229	1,193,597	5,723	0.72	6,294	0.65	1,474,170	7,068	0.58
2011	4,320	901,029	1,233,419	5,914	0.73	6,764	0.64	1,574,000	7,547	0.57
2012	4,580	955,257	1,312,755	6,294	0.73	7,253	0.63	1,776,820	8,519	0.54
2013	4,860	1,013,657	1,410,748	6,764	0.72	7,221	0.67			
2014	5,210	1,086,657	1,512,717	7,253	0.72			1,939,878	9,301	0.56
2015	5,580	1,163,829	1,506,179	7,221	0.77			2,058,464	9,869	0.57

주1: 시급의 월급여, 월급여의 시급 환산시 월간 노동시간은 주간 소정노동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의 합을 월단위로 환산하였음. 1988년 56시간, 1989-1990년 54시간, 1991-2003년 52시간, 2004년부터 48시간.

주2: 최임비율은 단신근로자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비율임.

\* 최임위 자료가 적용년도보다 2년 전 실태임을 고려하여 재계산.

## 임금실태(임금구조)

### ○ 저임금화 경향

-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음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자신의 임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절대적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다는 것.
- 표 3에서 보듯이 최임위 조사 기준으로 단신근로자 생계비 이하의 절대적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1/4 - 1/3 수준이며, 노총 기준으로는 절반 정도임.
- 단지 단신근로자 생계비 이하의 절대적 저임금 규모를 축소시키고자 해도 최저임금이 50% 인상되어야 함을 의미함.

- 중위임금 또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이 충분히 높거나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중위임금 수준까지도 단신근로자 생계비 기준 절대적 저임금 계층에 속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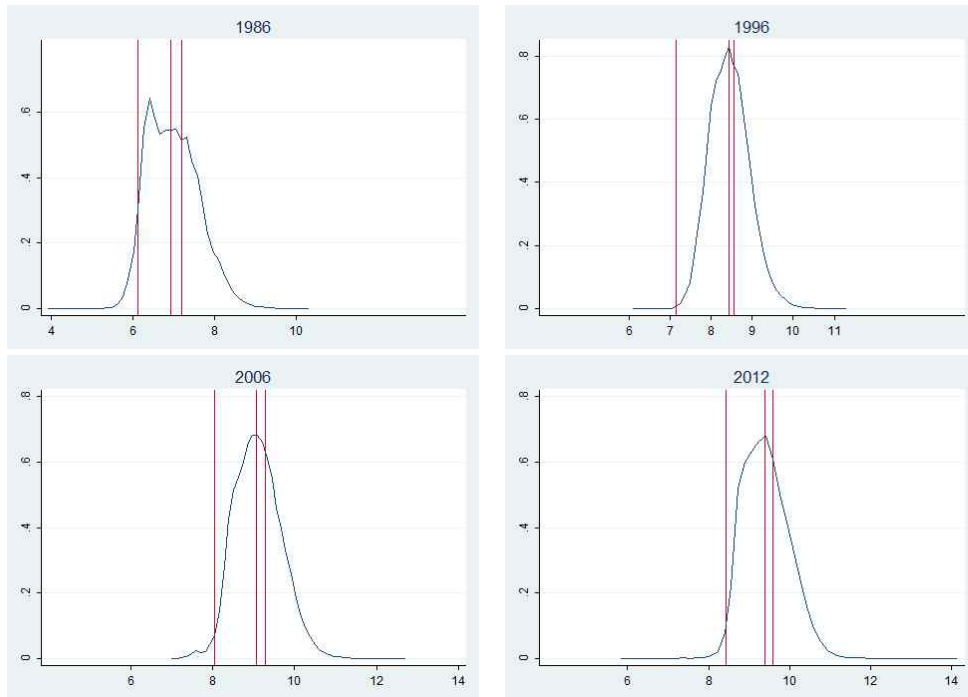
표3. 임금수준별 분포(%)

최저임금 기준	2013.8			2014.8		
	원	비중	누적	원	비중	누적
1배미만	<4,860	11.45	11.45	<5,210	12.09	12.09
1-1.5	<7,290	20.21	31.65	<7,815	21.69	33.77
1.5-2	<9,720	17.88	49.53	<10,420	19.04	52.81
2-2.5	<12,150	13.89	63.42	<13,025	11.88	64.69
2.5-3	<14,580	9.51	72.93	<15,630	9.56	74.26
3-3.5	<17,010	4.53	77.46	<18,235	7.11	81.37
3.5-4	<19,440	6.58	84.04	<20,840	5.59	86.96
4-4.5	<21,870	4.15	88.18	<23,445	3.89	90.85
4.5-5	<24,300	3.63	91.82	<26,050	2.59	93.44
5-5.5	<26,730	2.02	93.84	<28,655	0.8	94.24
5.5-6	<29,160	2.37	96.21	<31,260	2.44	96.68
6-6.5	<31,590	0.52	96.73	<33,865	0.65	97.33
6.5-7	<34,020	0.76	97.49	<36,470	0.9	98.23
7-7.5	<36,450	0.78	98.27	<39,075	0.36	98.59
7.5-8	<38,880	0.37	98.64	<41,680	0.51	99.1
8-8.5	<41,310	0.41	99.05	<44,285	0.11	99.21
8.5-9	<43,740	0.16	99.21	<46,890	0.32	99.53
9-9.5	<46,170	0.3	99.51	<49,495	0.06	99.59
9.5-10	<48,600	0.01	99.52	<52,100	0.09	99.68
10배이상	48,600≤	0.48	100	52,100≤	0.32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년도 8월.

- 그림 2는 외환위기 이후의 저임금화 경향을 드러냄. 임금구조가 변화했는데 간단한 숫자 한 두 개로 정보를 제한하면 현실의 윤곽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
- 상기하였듯이, 현재 한국의 저임금화 경향이 심각한 이유는 상대적 저임금층 규모의 증대뿐만 아니라 단신근로자 생계비와 비교했을 때 절대적 저임금층의 규모가 3분의 1 이상이라는 데 있음.

그림4. 커널 밀도함수(시간당 정액급여)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상용직 5+)』 각년도 원자료.

## 가구 생계비

### ○ 가구 실태생계비의 대략적 산출

- 최임위에서 단신근로자 생계비 산출시 이용하는 동일한 자료로 단신근로자 생계비가 아닌 가구 규모별 소비지출액의 중위값을 산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음.
- <표 2>의 최임비율은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의 각 항목별 평균을 이용하여 합산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가구형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총 소비지출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중위값을 나타냈음. 이 방식의 소비지출액은 더 낮고 최임비율은 더 높게 보임.
-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2인 이상의 가구 생계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함.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외벌이이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주라면 부채 없이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음.

표4. 가구형태별 소비지출비(중위) 대비 최저임금

중위값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소비지출	최임비율	소비지출	최임비율	소비지출	최임비율
1990	335,145	0.48	421,805	0.38	519,494	0.31
1991	424,253	0.44	522,897	0.35	635,643	0.29
1992	493,532	0.42	597,904	0.35	727,800	0.29
1993	533,297	0.43	667,264	0.34	812,091	0.28
1994	611,189	0.40	769,760	0.32	922,338	0.27
1995	701,111	0.38	902,749	0.29	1,052,845	0.25
1996	754,474	0.38	1,004,058	0.29	1,197,607	0.24
1997	778,922	0.41	1,086,024	0.29	1,273,096	0.25
1998	718,174	0.47	945,788	0.35	1,099,608	0.31
1999	796,854	0.43	1,080,420	0.32	1,289,985	0.27
2000	909,742	0.40	1,211,712	0.30	1,485,884	0.24
2001	1,003,173	0.42	1,351,568	0.31	1,588,528	0.27
2002	1,075,950	0.44	1,449,334	0.33	1,680,335	0.28
2003	1,044,753	0.49	1,498,530	0.34	1,788,574	0.29
2004	1,121,029	0.47	1,582,136	0.33	1,904,346	0.27
2005	1,118,416	0.53	1,663,403	0.36	1,966,777	0.30
2006	1,141,727	0.57	1,723,962	0.38	2,092,513	0.31
2007	1,202,994	0.60	1,793,492	0.40	2,174,798	0.33
2008	1,237,923	0.64	1,841,346	0.43	2,267,923	0.35
2009	1,224,370	0.68	1,878,878	0.44	2,319,864	0.36
2010	1,302,537	0.66	2,017,773	0.42	2,487,713	0.34
2011	1,378,182	0.65	2,159,829	0.42	2,652,229	0.34
2012	1,434,762	0.67	2,209,885	0.43	2,689,119	0.36
2013	1,491,031	0.68	2,253,379	0.45	2,702,120	0.38
2014	1,518,711	0.72	2,289,098	0.47	2,840,473	0.3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 ○ 실태생계비의 문제

- 사람들의 실제 소비로부터 생계비를 산출하는 실태생계비의 문제는, 소비가 소득을 반영한다는 데 있음. 소득을 반영한 소비 수준이 다시 소득 수준 결정을 위한 지표로 반영.
- <표 5>에서 생계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인 식주거보건비 지출까지도 소득이 적으면 줄여서 생활함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체 소비지출액이 아닌 항목별 지출액의 평균을 합산하는 것임. 그러나 이 방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음.
- 외환위기 이후의 저임금화 경향 때문. 항목을 나누어도 전반적인 소비 위축 상태가 생계비로 반영됨.
- 한국경제 성장구조의 ‘진단’인 임금주도성장론은 소득이 소비에 반영되는 순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에 기반함. 그렇다면 현재 경제 활력 정체 국면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진행된 저임금화-소비지출 감소에서 핵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음.
- 최저임금 수준은 특히 저임금층 일반 전체의 임금 수준에 폭넓은 영향을 끼치



므로 거시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기제임. 소비의 단위인 가구의 생계비를 밑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역부족.

표5. 가구형태별 경상소득, 소비지출 및 항목(원, 평균)

		1인	2인 (유배우자)	2인(기타)	3인이상 (유배우자)	3인이상 (가구주의 유취업자)	3인이상 (기타)
60 세 미만	가구형태 비중(%)	14.54	10.14	7.52	59.89	3.07	4.83
	경상소득	2,161,597	4,426,041	3,051,624	4,898,433	4,218,440	3,532,800
	소비지출*	1,347,125 (62.32)	2,416,591 (54.60)	1,820,491 (59.66)	3,065,616 (62.58)	2,365,167 (56.07)	2,394,927 (67.79)
	식료품비	362,690	629,640	499,171	783,631	690,657	604,375
	식주거비	606,908	888,288	745,791	1,063,469	974,731	869,419
	식주거 보건비*	686,247	1,050,278	864,819	1,239,193	1,128,326	1,020,216
60 세 이상	가구형태 비중(%)	41.07	35.33	5.09	17.21	0.81	0.49
	경상소득	880,039	2,075,181	2,019,766	4,020,463	3,589,934	1,604,036
	소비지출*	709,094 (80.58)	1,380,109 (66.51)	1,258,842 (62.33)	2,195,449 (54.61)	2,019,110 (56.24)	1,392,488 (86.81)
	식료품비	216,422	436,741	360,744	664,098	630,870	388,904
	식주거비	387,671	655,614	619,571	919,822	818,283	647,934
	식주거 보건비*	481,816	832,785	743,229	1,099,998	987,984	828,46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 괄호 안은 각각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비.

## 다른 생계비 계측방식<sup>1)</sup>

### ○ 생계비 계측방식의 종류

- 절대적(물량) 방식과 상대적 방식이 있음.

- (1) 전물량 방식: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한 최저 수준을 정하고 화폐가치로 환산. 자의성이 큼.
- (2) 반물량 방식: 최소한의 식료품지출비x3
- (3) 박탈지표 방식: 박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소득계층별로 보유하거나 누리는 양태를 비교하고, 일정소득 수준에서 향유하는 품목이 급격히 감소하는 소득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봄. 역시 자의성이 큼.
- (4) 소득과 지출을 이용한 상대적 추정방식: 평균이나 중위 소득 또는 지출의 일정비율로 정의되는 상대적 빈곤선으로 계측.

1) 이하의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를 참조하였음.

## ○ 전물량 방식의 문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해온 최저생계비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표준생계비<sup>2)</sup>는 모두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
- 두 생계비를 비교한 <표 6>에서 금방 파악되듯이 자의성이 대단히 많이 개입됨. 보사연은 ‘최저’,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큰 차이임.
- 각 방식이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얼마나 납득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할 것임.
- 납득가능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음.

표6. 2013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보사연 최저생계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보사연 4인가구 최저생계비
식료품비	369,410	739,842	901,222	1,095,398	1,204,485	1,348,577	596,476
주거비	469,429	1,163,682	1,163,682	1,199,735	1,199,735	1,199,735	286,331
광열수도비	62,868	98,710	131,791	141,950	141,950	141,950	114,461
가구가사집기비	124,902	192,054	231,059	245,833	257,366	260,574	45,653
피복비	97,277	194,555	219,033	246,632	269,452	302,503	66,851
교육비	-	-	-	450,000	485,000	649,292	73,803
교양오락비	606,708	702,500	627,500	723,333	729,500	739,500	31,018
교통통신비	156,397	565,332	583,750	608,959	649,759	690,559	151,144
보건위생비	133,339	242,412	243,647	267,516	282,516	282,516	67,247
비소비지출	227,720	691,595	657,253	896,841	964,883	1,080,216	173,735
합계	2,248,050	4,590,680	4,758,937	5,876,199	6,184,645	6,695,422	1,606,719

출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14), 『2014년 민주노총 임금요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주1: 생계비 계측을 위한 물가 조사 시점은 민주노총이 2013년 11월, 보사연이 2013년 1-2월.

주2: 자녀연령 구성이 다른 4인가구(1)은 8세와 6세, (2)는 13세와 11세, (3)은 17세와 15세.

## 새사연의 최저생활비용 추산

### ○ 의의

- 새사연에서 추산한 최저생활비용은 일종의 실태생계비임. 그러므로 이 모형도 실태생계비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
- <표 2>와 비교하면 1인가구의 최임위의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보다 더 낮은,

2) 이론생계비 모형에 의거하여 소비자 물가조사를 거쳐 산출.

그러므로 최저생활비용임.

- 최소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최저생활비용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가구 규모와 형태를 고려하여 파악하기 쉬움.

### ○ 모형과 자료

-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MIT에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임금가구의 생활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응용 설계한 모형(Basic Needs Budget)<sup>3)</sup>에 바탕을 둠.

최저생활비용 = 식료품비 + 주거비 + 보건의료비 + 양육비 + 교통비 + 조세 + 기타

- 최저생활비용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유형별, 지출 항목별 중위수를 추출하여 합산함.
- 이 자료에서 가계 지출의 대분류는 ①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②주류 및 담배 ③의류 및 신발 ④주거 및 수도광열 ⑤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⑥보건 ⑦교통 ⑧통신 ⑨오락·문화 ⑩교육 ⑪음식·숙박 ⑫기타 상품 및 서비스 ⑬비소비 지출.
- 각 항목의 내용은 다음의 분류로 구성함.

최저생활비용 항목	가계 지출 구성 내용
식료품비	①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 ⑪의 식사비
주거비	④주거 및 수도광열 - ④의 실제주거비 + 월세평가액
보건의료비	⑥보건 + ⑬의 사회보장의 건강보험료
양육비	⑩교육 + ⑫의 사회복지
교통비	⑦교통
조세	⑬의 경상조세 + ⑬의 연금 + ⑬의 사회보장의 기타사회보험료
기타	식료품비 × 2

주1: 기타는 의복, 통신, 가사용품, 레저 등을 포함하는데 식료품비 대비 비율의 전체 가구 평균이 약 3분의 2임.

미국 모형은 식료품비+주거비 대비 3분의 1을 쓰는데, 한국은 주거비가 커서 식료품비만으로 계산함.

주2: 주거비는 결국 ④의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연료비에 월세평가액을 더한 것임. ⑫의 사회복지지는 산후조리원, 보육료, 기타사회복지로 구성됨.

- 가구유형은 다섯 가지 형태를 고려함. **성인1**(핵심연령대인 만25-54세)/ **성인1-자녀1**(자녀 연령은 생산가능 연령 미만인 만14세 이하)/ **성인1-자녀2**(두 자녀 모두 만14세 이하)/ **성인2-자녀1**(자녀 연령 만14세 이하)/ **성인2-자녀2**(두 자녀 모두 만 14세 이하).
- 성인이 모두 취업자인 경우로 제한하여 산출함. 특히 외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비시장 노동으로 대체하는 지출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 또한 시간급 환산시 부부가 모두 전일제 맞벌이인 경우를 가정하므로 맞벌이 가구만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livingwage.mit.edu/pages/about>)를 참조.

## ○ 산출 결과

	성인1	성인1-자녀1	성인1-자녀2	성인2-자녀1	성인2-자녀2
식료품비	348,113	532,817	528,674	697,145	738,064
주거비	541,038	821,832	1,049,154	990,884	1,126,003
보건의료비	101,259	163,231	162,700	245,014	266,706
양육비	0	254,521	400,005	176,502	452,476
교통비	116,836	157,901	133,470	265,924	266,666
조세	102,675	84,599	111,646	274,156	301,045
기타	232,075	355,211	352,449	464,763	492,043
최저생활비용	1,441,996	2,370,112	2,738,098	3,114,388	3,643,003
시간급 환산 (주 40시간 전일제 기준)	6,914	11,364	13,128	7,466	8,733

- 가구생계비가 아닌 단신근로자 생계비의 특징은 양육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가구단위의 소비와 사회적 재생산 측면은 간과하는 것.
- 단신근로자의 최저생활비용으로 고려해도 역시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매우 낮음. 맞벌이 부부가 한 명의 자녀를 키운다고 해도 2014년 최저임금의 1.43배, 두 명의 자녀를 키우려면 1.68배의 시급을 받아야 했음. 이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노동자 비중이 33.77%였음(표 3).

## 결론 및 정리

- 민주노총이 제공한 가계부 조사 자료의 두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지출내역에서, 교육비와 급식비를 포함하는 평균 양육비 지출은 50만원 안팎(512,248원)이었음.
- 양육비는 소득이 적어도 자녀가 있는 경우 줄이기 어려운 소비항목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양육비 소비 또는 양육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지, 그것이 최저임금의 운영 목표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함.
-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단신근로자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함.
- 사회의 존립과 재생산에 필요한 가구생계비 수준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3분의 1 규모.
- 현재 한국 경제의 활력 감소의 원인이 이와 같이 절대적 저임금 상태의 노동자 비중이 높은 데 있지 않은지 생각해야 함.
- 사회적 재생산을 위협하는 절대적 저임금의 해소가 최저임금제의 본래적 목표이므로, 최저임금제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 저임금 수준과 비교에 기초해야 함.
- 최저임금제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것이므로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폭넓게 사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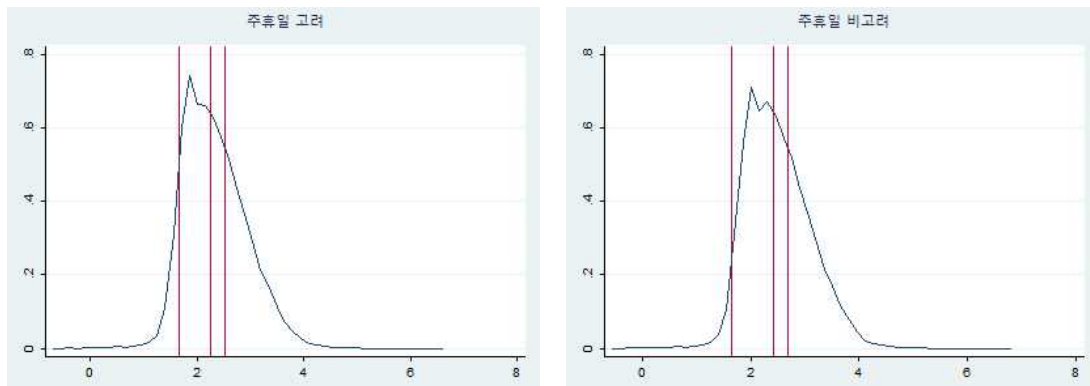
〈별첨〉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4년 자료 분석 결과.

〈표 1〉 2014년 임금구조 실태

최저임금기준	원	주휴일 고려		주휴일 비고려	
		비중	누적	비중	누적
1배미만	<5,210	9.5	9.5	3.66	3.66
1-1.25	<6,513	14.58	24.07	9.26	12.92
1.25-1.5	<7,815	12.78	36.85	12.34	25.26
1.5-1.75	<9,118	9.89	46.74	10.27	35.53
1.75-2	<10,420	8.8	55.54	9.09	44.62
2-2.25	<11,723	6.88	62.42	7.19	51.82
2.25-2.5	<13,025	6.01	68.43	6.87	58.69
2.5-2.75	<14,328	4.76	73.19	5.55	64.24
2.75-3	<15,630	3.92	77.11	4.72	68.96
3-3.25	<16,933	3.31	80.42	3.97	72.93
3.25-3.5	<18,235	2.74	83.15	3.23	76.16
3.5-3.75	<19,538	2.43	85.59	2.99	79.15
3.75-4	<20,840	1.97	87.56	2.73	81.88
4-4.25	<22,143	1.71	89.27	2.23	84.11
4.25-4.5	<23,445	1.36	90.63	1.92	86.03
4.5-4.75	<24,748	1.13	91.76	1.48	87.51
4.75-5	<26,050	1.1	92.86	1.52	89.03
5-5.25	<27,353	0.88	93.75	1.22	90.24
5.25-5.5	<28,655	0.84	94.59	1.05	91.29
5.5-5.75	<29,958	0.68	95.26	0.87	92.17
5.75-6	<31,260	0.68	95.95	0.96	93.13
6-6.25	<32,563	0.47	96.42	0.73	93.86
6.25-6.5	<33,865	0.43	96.85	0.71	94.56
6.5-6.75	<35,168	0.37	97.22	0.6	95.17
6.75-7	<36,470	0.29	97.51	0.5	95.67
7-7.25	<37,773	0.26	97.77	0.45	96.12
7.25-7.5	<39,075	0.22	97.99	0.39	96.5
7.5-7.75	<40,378	0.2	98.19	0.37	96.87
7.75-8	<41,680	0.19	98.39	0.34	97.21
8-8.25	<42,983	0.15	98.54	0.27	97.48
8.25-8.5	<44,285	0.16	98.7	0.27	97.75
8.5-8.75	<45,588	0.12	98.81	0.24	97.99
8.75-9	<46,890	0.1	98.91	0.19	98.18
9-9.25	<48,193	0.09	99	0.16	98.34
9.25-9.5	<49,495	0.07	99.06	0.14	98.49
9.5-9.75	<50,798	0.11	99.17	0.18	98.67
9.75-10	<52,100	0.08	99.26	0.12	98.79
10배 이상	52,100≤	0.74	100	1.21	100

주: 시간당 정액급여 계산시 주휴일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

〈그림 1〉 커널 밀도 함수(시간당 정액급여)



〈표 2〉 임금수준별 특성(주휴일 고려)

최저임금 기준	원	여성비중(%)	평균연령(세)	월간 총노동시간	근속기간(년)	5인미만 사업체비중(%)	노조 가입률(%)
1배미만	〈5,210	57.01	43.06	201.12	2.87	42.46	6.82
1-1.5	〈7,815	57.88	40.93	186.14	2.95	30.33	5.62
1.5-2	〈10,420	43.99	39.27	178.84	4.01	20.65	10.02
2-2.5	〈13,025	33.54	39.21	175.16	5.44	14.29	12.63
2.5-3	〈15,630	27.45	40.04	170.58	6.81	11.74	15.2
3-3.5	〈18,235	24.2	40.74	166.93	7.96	8.99	17.52
3.5-4	〈20,840	20.88	41.34	163.82	8.80	7.09	17.25
4-4.5	〈23,445	20.84	42.53	162.71	10.50	6.84	20.38
4.5-5	〈26,050	20.05	43.55	161.55	11.72	5.67	19.73
5-5.5	〈28,655	18.38	44.31	161.01	12.92	4.9	18.01
5.5-6	〈31,260	19.03	45.00	158.44	13.66	4.65	17.82
6-6.5	〈33,865	15	45.40	158.48	14.30	4.13	16.7
6.5-7	〈36,470	14.39	46.57	158.60	15.10	4.09	15.49
7-7.5	〈39,075	14.86	47.14	157.17	14.40	4.21	12.4
7.5-8	〈41,680	18.34	46.87	155.86	14.38	3.76	16.56
8-8.5	〈44,285	21.38	46.92	154.94	13.72	4.35	13.68
8.5-9	〈46,890	23.79	47.16	154.19	13.26	4.75	10.03
9-9.5	〈49,495	20.05	47.78	154.80	13.41	3.42	7.24
9.5-10	〈52,100	30.55	45.77	149.78	11.39	7.47	7.1
10배이상	52,100≤	25.83	47.31	145.04	9.98	5.1	3.24
전체		40.99	40.98	177.42	5.61	20.02	11.12

주: 월간 총 노동시간(소정노동시간+초과노동시간), 근속기간, 5인미만 사업체 비중, 노조 가입률 계산시 특수형태, 재택/가내, 일일, 단시간 고용형태는 제외.

〈표 3〉 최저임금 미만자 특성

	확실	사각*
미만자 구성비(%)	38.51	61.49
여성비중(%)	52.82	59.63
연령(세)	45.51	41.52
월간 총노동시간	212.43	194.86
근속기간(년)	3.24	2.67
5인미만 사업체 비중(%)	46.68	40.13

주: 시간당 정액급여의 계산시 주휴일을 고려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이상이지만 주휴일을 고려하면 미만인 경우.



〈표 4〉 확실 미만자 분포(%)

직업 산업	1	2	3	4	5	6	7	8	9	직업 전체
1	0	0.01	0.02	0.02	0	0.1	0.02	0.09	0.04	0.3
2	0	0	0.01	0	0	0	0	0.01	0.01	0.03
3	0.05	0.28	1.18	0.08	0.22	0.03	1.68	5.7	2.93	12.16
4	0	0	0	0	0	0	0	0	0	0.01
5	0.01	0.01	0.04	0	0.01	0	0	0.04	0.04	0.13
6	0	0.51	0.58	0	0.01	0.08	0.72	0.39	0.23	2.53
7	0	0.28	2.95	0.51	7.94	0	0.26	0.6	2.25	14.78
8	0.01	0.02	0.64	0.05	0.14	0	0.05	11.95	1.18	14.03
9	0.07	0.04	0.43	7.38	0.79	0	0.24	0.03	4.92	13.9
10	0	0.13	0.12	0	0.06	0	0	0.01	0.05	0.37
11	0	0.1	0.3	0	0.04	0	0	0.02	0.05	0.52
12	0	0.31	0.43	0.2	0.12	0	0.27	0.42	14.76	16.51
13	0	0.61	0.55	0	0	0	0.09	0.03	0.04	1.31
14	0	0.13	0.99	0.51	0.09	0.16	0.07	0.77	2.47	5.21
15	0	0.59	0.37	0.06	0.01	0	0	0.11	0.49	1.63
16	0	2.08	0.53	1.06	0.03	0.04	0.31	0.16	0.9	5.11
17	0	0.19	0.63	1.34	0.25	0.07	0.04	0.01	0.27	2.81
18	0	4.47	1.57	0.97	0.34	0	0.63	0.07	0.6	8.66
산업 전체	0.15	9.79	11.33	12.17	10.04	0.49	4.39	20.4	31.24	100

〈표 5〉 사각 미만자 분포(%)

직업 산업	1	2	3	4	5	6	7	8	9	직업 전체
1	0	0.01	0.02	0	0	0.07	0.01	0.01	0.09	0.22
2	0	0	0.01	0	0	0	0.01	0.02	0.01	0.06
3	0.02	0.87	2.07	0.1	0.25	0.11	3.14	10.41	4.27	21.25
4	0	0	0	0	0	0	0	0.01	0.01	0.03
5	0	0.02	0.06	0.01	0	0	0	0.04	0.08	0.21
6	0.02	0.67	1.02	0	0.03	0.1	1.52	0.53	0.22	4.11
7	0.01	0.43	3.75	0.24	9.22	0.03	0.32	0.56	4.78	19.32
8	0.01	0.02	0.65	0.05	0.13	0	0.06	4.97	0.66	6.53
9	0	0.03	0.32	6.46	0.71	0.01	0.41	0.03	3.77	11.74
10	0	0.32	0.27	0.01	0.23	0	0.04	0.01	0.1	0.98
11	0	0.12	0.48	0.01	0.09	0	0	0.01	0.03	0.74
12	0	0.24	0.55	0.06	0.16	0	0.16	0.42	6.68	8.28
13	0	0.73	0.94	0.03	0.03	0.01	0.03	0.06	0.05	1.88
14	0.01	0.38	1.49	0.35	0.58	0.04	0.21	0.79	3.03	6.88
15	0.01	0.73	0.46	0.06	0.02	0.01	0	0.1	0.38	1.77
16	0	4.81	0.71	1.17	0.01	0.01	0.13	0.09	1.23	8.16
17	0	0.32	0.6	0.79	0.46	0.05	0.02	0.01	0.36	2.62
18	0	1.11	1.26	1.06	0.29	0	0.76	0.24	0.52	5.24
산업 전체	0.09	10.82	14.65	10.41	12.18	0.44	6.83	18.31	26.26	100

주: 한국표준분류에 따른 산업(9차)과 직업(6차)의 대분류는 다음과 같다.

산업(1농림어업 2광업 3제조업 4전기가스증기및수도산업 5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6건설업 7도소매업 8운수업 9숙박및음식점업 10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1금융및보험업 12부동산업및임대업 13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4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5교육서비스업 16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7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8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직업(1관리자 2전문가및관련종사자 3사무종사자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 6농림어업숙련기능종사자 7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8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9단순노무종사자).

##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7월 3일 현재

아젠다	발간 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노동	4/16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고용,노동	4/21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상동
고용,노동	4/28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송민정
경제	5/7	법인세의 모든 것 : ②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이상동
주거	5/14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진남영
고용,노동	5/18	2015년 4월 노동시장 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김수현
고용,노동	5/21	노동자가 소비자다 : 떠오름과 빈곤의 역학	이정아
주거	6/5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①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 새로운 주체의 발견과 청년의 사회혁신	민달팽이 유니온
주거	6/8	주거문제의 혁신, 해답은 '현장' 에 있다	민달팽이 유니온
지역,사회	6/12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① : 인구기초통계	강세진
경제	6/15	죽을 때까지 저축하는 이유	이정아
복지	6/19	국민연금 적정선 논의, '현실'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최정은
고용,노동	6/23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송민정
고용,노동	6/25	2015년 5월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김수현
복지	6/29	공무원 연금 개정안으로 열린 '기회의 창'	이은경
고용,노동	7/3	가구생계비로서의 최저임금	이정아

